

'알게 할 권리'와 '알리지 않을 권리'

이 승 선

목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아이를 물어가려고 민가를 어슬렁거리던 호랑이 한 마리가 '옛다 곳감'이라는 노파의 한 마디를 듣고 혼비백산, 삼십육계를 놓는다. 호랑이의 얼룩무늬 문신에 금수의 왕 사자조차 무릎을 꿇는다는 상징과 외모자본의 절대 우위 시대에 밀림의 지존 호랑이의 처세 치고는 웅졸하고 용렬한 줄행랑이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우는 아이를 물어가려고 호랑이가 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도 '놀라지' 않던 아이가 곳감 이야기에 '뚝'하고 울음을 멈췄는데, 호랑이와 곳감 같은 이야기는 또 있다.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권위자인 메릴 교수는 최근에 펴낸 그의 네 번째 개정판 '글로벌 저널리즘'(Global Journalism)이란 책에서 한국의 곳감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언론계에선 'chonji'(촌지)를 통해 언론과 권력 간의 적대적 긴장감이 해소되고 더욱이 언론인들이 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계의 부끄러운 촌지 관행은 국제 저널리즘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저명 학자의 책을 통해 고유명사 *chonji*로 버젓이 등록되고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호랑이와 권력의 매서운 '발톱'보다 곳감과 촌지의 감미로운 '달콤함'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이다.

촌지의 효능은 '관심'을 통제하는데 있다.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아니면 관심을 줄여달라는 메시지의 간곡한 전달이다. 혹은 세상 대중이 자신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도록, 아니면 더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도록 차

단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언론인을 매수하는 공작금이기도 하다.

거먹구름 드리우듯 무관심이 팽만한 시대에 자유자재로 관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권력인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골목마다 넘쳐나고 자녀에게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노인들이 병든 노구를 쓸쓸히 혼자 수습할 때조차 이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감응장치는 무디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가족·학교·이웃들의 무관심 속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가식 서가숙 하듯 자녀들 집을 예제 전전공공하던 노인들이 '더 이상

집이 되기 싫다'며 억지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동·노인복지 시스템은 역부족이다. 사회와 정책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비·보완해 왔더라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따위의 불행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집 '바깥'의 주위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권면에 권면을 거듭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덕목이다.

현대 사회의 교육기구들 중 언론매체가말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갈파한 미국의 허친스 위원회는 언론이 교육자적인 자세로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진단한 바 있다(언론자유위원회, 2001: 47-58). 따라서 언론이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로 추앙받는 '관심'을 사회일반에 대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견인하는 자세는 심히 치하하고 표창할 만한 일이다. 초등학생이 자살에 이르도록 방조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에 대해 경향 각지 신문·방송은 이를 힐난하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언론이 사회 내부의
구석구석까지 관심을 보이고,
권력에 대해 부단한 감시를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 구현에 있어

2. 언론의 '알게 할 권리'

언론이 우리 사회 내부의 구석구석에 대해 간단없는 관심을 보이고, 권력의 작동 시스템에 대한 부단한 감시·견제를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국민의 알권리 구현에 있다. 표현하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

본권이다. 행복할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인 국민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생각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법원도 인간 인격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인간의 권리에 속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토론을 통해 형성되고 전파되는 여론은 민주정치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명선이라고 간파하였다. 언론에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여백을 부여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았다.¹⁾

그런데 자유로운 표현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알아야 표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가 정보의 자유로운 수용·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인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0.10.12.선고 89가합18505판결.

판시하였다. 나아가 알 권리가 민주국가의 국정 공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²⁾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 보장 간의 이익형량 기준을 제시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볼 수 있는 97헌마265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즉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 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 실현의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규정하였다. '국민이 듣고, 읽고, 보는 이른바 알 권리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실시하였다.³⁾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듣고·보고·읽고·말을' 권리인 알 권리는 언론이 정보원에게 위·적법

한 방식을 통해 접근할 때,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적절·부적절한 내용으로 공포할 때, 그리고 보도로 인해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의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벗으려고 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언제든 뽑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무기다.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할 권리', 혹은 국민들에게 알릴 권리, 그것은 현대 사회의 언론매체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권리행사이면서 다른 한편 두텁게 행사할 수 있는 언론의 특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 하찮은 모기 한 마리 베려고 장검을 뽑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란 이름을 걸고 언론의 체면을 보호하려든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고 보도해버린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s) 사건쯤 돼야 한다거나, 비밀 폭로에 따른 살해의 위협과 취재원 비닉으로 인한 투옥을 감히 각오하고 '딥 쓰로우'(Deep Throat)를 접촉한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의 번스타인과 우드워드라는 두 젊은 기자의 배

포 정도는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당시 워싱턴 포스트 브래들리 편집국장과 캐서린 발행인의 결단과 기자들에 대한 지원을 본받자는 외침도 나온다. 물론 근현대 한국 언론사를 일별해보더라도 부정·부당한 권력에 맞서 추상같은 기개와 담력을 선보인 언론인이 한둘 아니다.

3.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

그러나 펜타곤 페이퍼·워터게이트처럼 언론과 권력핵심 간의, 혹은 알권리와 국가기밀보호 명분 간의 첨예한 대립만이 위협을 무릅쓰고 언론이 부담해야 할 몫의 전부는 아니다. 더러는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언론의 알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 이른바 국민들에게 '알게 할 권리'의 방식,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할' 내용은 국가안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

2) 헌법재판소 1989.9.4.선고 88헌마22결정.

3)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훼손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사로운 내용을 개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알리지 않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는 언론의 알 권리, 혹은 언론의 ‘알게 할 권리’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프라이버시를 헌법 제17조 등으로 포괄적이면서도 확실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권리가 무시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찍이 100여년 전,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성과 법적 이익을 주창하고 나선 이들도 미국인 변호사 워렌과 브랜다이즈였고 현재 미국의 각급 법원 역시 이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법·언론윤리·저널리즘 교과서에도 언론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의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Stovall, 2005: 458-459). 대륙

법계 국가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일반적 인격권의 한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현대의 언론매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잠재적으로 가장 광범한 법적 관심사이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아직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는 언론의 알 권리, 혹은 언론의 ‘알게 할 권리’를 위협해

(Zelezny, 2004: 170-171). 물론 국내외의 소송실무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고전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제발 가만히 혼자 있을’ 소극적·수동적 권리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즉, 프라이버시는 알 필요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자 자기 관련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미국에서는 저명한 법학자인 사람인 프로서(W.L. Prosser)가 1960년에 발표한 분류법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유형을 첫째, 개인의 은거나 독거 또는 사적 내용에 대한 침입, 둘째, 난처한 사적 사실을 공표하는 것, 셋째, 공중이 특정인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만드는 공표, 넷째, 개인의 성명·초상을 침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중 네 번째 유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성명권·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별도 논의되고 있고(한위수, 1999) 세 번째 유형은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취급되거나 명예훼손과 분리하지 않고 다루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최소한 10개주 이상에서(Overbeck, 2004: 183-185),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언론소송에서 세 번째 유형의 프라이버시침해와 명예훼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한국법원은

프라이버시란 헌법 제17조에 표현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규정하였다.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이라는 것이다.⁵⁾

'알리지 않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은 '알게 할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억제할 수 없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한편, 나아가 무관심한 국민들의 잠자는 이성을 깨우쳐 공적 관심을 갖도록 견인하는, 거룩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알리지 않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된다. 그것도 장삼이사나 필부필부들이 아닌 '유명한 사람', 이른바 공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인들의 공적 활

동영역에 대한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법적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진실하다면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문제는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공인과 언론간의 다툼이 있을 때 발생한다.

4. 공인의 사생활과 '정당한 관심사' 간의 조화

새해 벽두에 터진 유명 광고회사의 '연예인 X파일' 파문을 비롯, 지나간 석 달 동안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논쟁을 유난히 많이 겪었다. 7월 시행을 앞둔 위치정보보호법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안, 유비쿼터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가져 올 부작용으로서 사생활 침해, 사회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을 실어 배포해 온 일명 '짜라시'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

월초,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학생증 도입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 4월초에 인권위는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개인정보 인권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인권위는 초등학교들의 일기장 검사가 아동의 양심과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언론은 글쓰기와 학생지도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임의 일기장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쪽과 글쓰기·학생지도는 논술교육이나 기타 활동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차제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기장 검사식 교육방법이 합리적이었다를 반성해보자는 진영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그 와중에 부산 초등학교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적지 않은 언론은 그 학생의 '일기장'에

4) 서울지법 1997.2.26.선고 96가합31227판결.

5) 대법원 1998.9.4.선고 96다11327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과 관련 있음을 판시하였다.

적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공공연하게 적시하였다. 일부 언론은 또박 또박 적은 일기장을 촬영해서 그 사진까지 지면에 실었다. 자살한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속속 공개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언론의 ‘알게 할 권리’의 영역이었는가, 아니면 일부의 지적처럼 센세이셔널한 선정적 보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혹은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였던, 나아가 어쩌면 언론이 보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직한 사안은 한 국회의원의 호텔방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딸 사건, 새 병역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 명단 공개축구 사건 등이라 할 것이다.

공인·공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이들의 호텔·딸·국적포기 내용을 다루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대상인지, 그리하여 언론이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할 권리’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록 그들이 공인·공직자이긴 하지만 위 내용들은 내밀한 자신의 사사로서 알리고 싶지 않은, 나아가 법적으로 ‘알리지 않을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프라이버시인지에

대한 논쟁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교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사고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공인·공직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언론보도가 법정에서 쟁점될 때, 법원은 그것이

**언론은 보도하고자 하는 사안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인지에 대해
타율적 법리에 앞서
고도의 자율적 판단을 내려야**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였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유무를 가린다. 이를테면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성적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를 구성할 때에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타율적 판단법리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이 보도하고자 하는 사안이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을 때, 혹은 사

생활 침해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과연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도의 자율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관음증을 해갈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관심사’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언론의 ‘알게 할 권리’의 영역이 아닌 공인의 ‘알리지 않을 권리’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언론자유위원회 저, 김택환 역 (2001).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중앙 M&B.
한위수 (1999).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제19권 제2호, 통권71호, 47-61쪽.
Beer, A.S. & J.C. Merrill (2005). *Global Journalism: Topical Issues and Media Systems*,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Overbeck, W. (2004).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Learning.
Stovall, J.G. (2005). *Journalism*,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Zeletzny, J.D. (2004). *Communications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